

제 4 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 1 절
원산지 증명

제 4.1 조
원산지 증명서

1.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마련한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가 그 국내법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¹
3. 각 당사국은
 -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4. 제 3 항은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가 다음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 가. 자국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수입, 또는

¹ 한국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캐나다의 경우, 영어 또는 불어로 한다.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정한 대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명시된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자국 영역으로의 동일한 상품의 복수 수입

6. 제 3 항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일 후 최소 2 년 동안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원산지의 증명서로 인정된다.

7.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한다.

제 4.2 조 수입 관련 의무

1.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가.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것

나.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를 작성할 것

다.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라. 그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공하며, 그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상품의 수입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할 것, 그리고

마. 수입자는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수정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할 것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수입자가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 나. 수입자가 제 1 항마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부정확한 신고에 대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 4.6 조에 따른 원산지 검증을 개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그 상품이 수입된 날 이후 최소 1 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명시되는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그러한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한 결과로 납부되었던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4.3 조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가격이 미화 1,0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수입, 또는
- 나. 상품이 수입되는 영역의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의 수입

다만, 그 수입은 제 4.1 조 및 4.2 조의 증명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준비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4.4 조 수출 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제 4.1 조제 3 항나호 3 목에 따라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공한 자국 영역의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그 밖의 요구된 서류를 관세행정기관에 제공한다. 그리고
- 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받은 모든 인에게 그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2. 각 당사국은

- 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허위 증명서가, 허위 진술 또는 표시에 관한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동등한 법적 결과를,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부정확한 증명에 관련하여 제 1 항나호에 따른 서면 통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행정 및 집행**

**제 4.5 조
기록유지요건**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서가 서명된 날부터 5 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한 더 긴 기간 동안 다음에 관련된 기록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에 관련한 기록을 자국 영역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 1)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그 상품의 구매, 비용, 가격과 그에 대한 지불
- 2)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 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격과 그에 대한 지불
- 3)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 4)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그 밖의 서류, 그리고

- 나.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한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그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청하는 기록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제 4.6 조 원산지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 질의
- 나. 제 4.5 조가호에 언급된 기록의 검토 및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또는
-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

2. 제 1 항나호에 따른 검증 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 가. 다음에 대하여 방문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한다.
 -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2)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그리고
 - 3)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방문을 제안하는 당사국 영역 내의 다른 쪽 당사국 대사관, 그리고

나.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다.

3. 제 2 항에 언급된 통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행정기관의 신원
- 나.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름
- 다. 검증 방문 예정일자 및 장소

라.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를 포함하여, 예정된 검증 방문의 목적과 범위

마.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바. 검증 방문을 위한 법적 권한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 2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예정된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그 방문의 대상이 되었을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제 2 항에 따른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6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예정된 검증방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갖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 2 항에 따른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그 관세행정기관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검증 방문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7. 당사국은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른 검증 방문의 연기만을 이유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8.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검증 방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그 방문 동안 참석할 한 명 또는 두 명의 참관인을 지정하도록 허락한다. 다만,

가. 그 참관인들은 참관인이 아닌 방식으로 참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참관인들을 지정하지 못한 것은 방문의 연기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가치 평가, *m*소기준 계산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는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 영역내의 적용가능하고, 「관세평가협정」을 준수하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한다.

10.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사실의 조사결과와 그 결정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한다.

11. 당사국에 의한 검증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행위유형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충족한다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인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 3 장(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때까지 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한 동일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보류할 수 있다.

제 4.7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국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8 조 비밀 유지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이 장 하에서 수집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력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그 정보를 받은 당사국이 자국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에게 통보한다.

2. 이 장 하에서 수집된 비밀 정보는 그 비밀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결정 및 관세 사안의 결정에 대한 행정 및 집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획득된 정보는 제 3 장(원산지 규정)과 이 장을 이행하는 관세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기된 행정적,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은 그러한 사용을 미리 통보 받을 것이다.

제 4.9 조 벌칙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관련된 자국 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 민사 또는 행정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 4.2 조제 2 항, 제 4.4 조제 3 항 및 제 4.6 조제 7 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 법에 따라 그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조치들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사전심사결정

제 4.10 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자국 영역의 수입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서면 사전심사결정을 신속하게 발급한다.

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재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발생한 생산의 결과로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쳤는지 여부

나.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대로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또는 순위가에 기초한 가치 평가를 충족하는지 여부

다.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가치 평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하는 가치에 대한 적절한 근거

라.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자국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 2.6 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바. 품목분류, 실행 관세율 또는 수입관련 적용 가능한 어떠한 조세, 또는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여 사전심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사전심사결정 신청에 대한 평가 과정 동안, 그 결정을 요청하는 인으로부터 보충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그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을 요청하는 인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이후, 통일규칙에 명시된 기간 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다. 사전심사결정이 그 심사를 요청한 인에게 불리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그 인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신청이 다음의 대상인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 관세행정기관이 그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검증

나. 관세행정기관에 의한 재심 또는 관세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다. 자국 국내법에 따른 자국 영역 내의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재심

5. 제 7 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이 신청된 상품의 자국 영역 내로의 수입에 대하여 그 결정의 발급일자부터 또는 그 결정에 명시된 더 늦은 일자부터 사전심사결정을 적용한다.

6. 사실과 상황이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경우,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 신청에 대하여 일관적인 대우를 제공한다.

7. 사전심사결정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사전심사결정이 다음에 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

1) 사실

2) 사전심사결정의 대상인 상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3)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가치 평가의 적용, 또는

4)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 2.6 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른 무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결정을 위한 규칙의 적용

- 나. 사전심사결정이 제 2 장(상품의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한 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라. 제 2 장(상품의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또는 통일규칙의 변경에 따르기 위한 경우, 또는
- 마. 사법적 결정 또는 자국 국내법의 변경에 따르기 위한 경우

8.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변경 또는 철회가 발급된 일자 또는 그 결정에 명시된 더 늦은 일자에 사전심사결정의 변경 또는 철회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사전심사결정을 발급받은 인이 그 조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일자 이전에 발생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9.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인이 그 심사결정을 선의로 의존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 당사국은 90 일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 변경 또는 철회의 발효 일자를 연기한다.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을 내린 상품의 가치평가를 조사하는 경우, 그 관세행정기관이 다음의 경우를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 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사전심사결정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작업이 사전심사결정이 근거로 한 실질적인 사실과 상황에 합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 다. 가치 산정 또는 비용 할당을 위한 근거 또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사용된 증빙 자료와 계산이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정확한지 여부

1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 10 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상황이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2.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이 처벌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이 그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을 제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선의로 행동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나.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1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을 허위 진술했거나 누락했거나, 또는 그 사전심사결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4 절 원산지 결정 및 사전심사결정의 재심 및 불복청구

제 4.11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다음의 인에게,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내린 원산지 결정 및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재심 및 불복청구에 대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가.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인, 또는

나. 제 4.10 조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

2. 제 19.3 조(행정절차) 및 제 19.4 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제 1 항에 언급된 재심 및 불복청구 권한이 다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가.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 그리고

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최종단계의 행정적 재심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재심

제 5 절 통일규칙

제 4.12 조 통일규칙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그 각각의 법, 규정 또는 행정 정책을 통하여, 이 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시간 내에 통일규칙의 모든 변경 또는 추가를 이행한다.

제 6 절 협력

제 4.13 조 협력

1.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것들을 포함하여 다음의 결정, 조치 및 심사결정을 한쪽 당사자의 공식 언어(들)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 가. 제 4.6 조에 따라 실행되는 검증의 결과로써 발급된 원산지 결정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또는 가치, 또는 원산지 결정의 대상인 상품의 순원가 계산시 비용의 합리적인 할당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발급한 심사결정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인지하는 결정
 - 다. 앞으로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격하게 수정하는 조치, 그리고
 - 라. 제 4.10 조에 따른 사전심사결정 또는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심사결정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준수를 촉진하고 더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관세 관련 분야에서 협력 조치의 범위, 시기 및 비용에 관하여 그러한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다음에 있어서 협력한다.
 - 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그 각각의 관세 관련 법 또는 규정의 집행, 그리고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세관상호지원 협정 또는 그 밖의 관세 관련 협정에 따른 집행

- 나.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양 당사국 간 무역 흐름을 촉진할 목적으로,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교환,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의 조화, 정보 요소의 표준화, 국제적 정보 구문의 수락 및 정보 교환과 같은 관세 관련 사안
- 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세 분석 기법의 조화 및 관세 분석소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 라.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관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 및 사용자들을 위한 모의 심사 환경 실습과 같은 관세 관련 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조직
- 마. 무역 및 사업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개발
- 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양 당사국이 일관적으로 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검증 표준 및 체계의 개발
- 사.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혜관세 대우 및 원산지 국가 표기의 목적상 수입되고 수출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있어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정보 교환, 그리고
- 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이라 한다)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WCO의 「무역안전 및 원활화 표준에 관한 체계」 및 「지역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APEC 모범조치」에 규정된 것과 같은 상호 인정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제 4.14 조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제 3 장(원산지 규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3.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또는 통일규칙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제안을 검토

-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대한 변경을 시의 적절하게 준비하고 이러한 변경을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반영
- 다.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변경을 검토하며 다음 사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대한 변경과 부속서 2-라(관세 철폐), 또는
 - 2) 부속서 2-라(관세 철폐) 그리고 국가 상품분류체계
- 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 마. 가호 및 나호에 따른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또는 통일규칙의 모든 합의된 변경 또는 추가에 대한 공동위원회 통보, 그리고
- 바. 다음 사항의 합의를 위한 노력
 - 1)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및 통일규칙의 통일된 해석, 적용 및 행정
 - 2) 제 3 장(원산지 규정), 이 장 및 통일규칙의 변경 또는 추가
 - 3) 한쪽 당사국이 위원회에 제기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 그리고
 - 4)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관세 관련 사안

제 7 절 무역원활화

제 4.15 조 목적 및 원칙

1. 이 협정상 무역의 원활화 및 다자적 기반의 무역원활화 이니셔티브의 추진 협력을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기반으로 이 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 절차를 운영하는 것에 합의한다.

- 가. 절차는 수입자 및 수출자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그러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간소화된다.
- 나. 절차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국제무역조치 또는 국제표준에 근거한다

- 다. 반입 절차는 수입자와 수출자에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하도록 한다.
- 라. 무역원활화 조치는 또한 국가적 요건의 효과적 집행과 준수를 통하여 인을 보호하는 체계를 지원한다.
- 마. 그러한 과정에 관계되는 직원 및 절차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반영한다.
- 바. 당사국의 절차에 대한 상당한 변경의 전개는, 이행에 앞서 그 당사국의 무역 공동체 대표 간의 협의를 포함한다.
- 사. 절차는 주목할만한 거래에 관한 준수 노력에 집중하도록 위험 평가 원칙에 근거하며,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촉진하고, 수입자 및 수출자의 자발적인 의무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 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 및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 기술 지원 및 모범 사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교환을 장려한다.

제 4.16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 1 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 가. 자국 국내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제한, 통제, 규율 및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 반출에 제공되는 절차
 - 나. 가능한 한도에서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도착 시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제한, 통제, 규율 또는 금지된 상품을 제외한 상품이 최초의 도착 지점에서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자국 국내법에 따라, 모든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를 납부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반출하도록 허용하는 절차²

3.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 시간, 일주일 7일 반출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4. 양 당사국은 할당, 보건 관련 또는 공공 안전 요건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해 또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 상품의 반출을 위해서는 당국이 반출되는 상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자국 각 기관의 요건이, 기관이나 그 기관을 대신하는 관세당국이 이러한 요건을 집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조정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요구된 모든 자료를 하나의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목적으로 자국의 각 기관의 데이터 요건을 조화시키는 조치를 한다.

6. 양 당사국은 보다 나은 협력 증진 및 전자적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자국의 무역 및 사업공동체와의 협의수단을 마련한다.

제 4.17 조 자동화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가. 신속한 반출 절차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과 무역 공동체 간 전자적 정보교환을 규정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나. 그러한 전자적 정보교환을 위하여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 대 정부 간 국제무역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간 호환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WCO의 관세정보표준 및 WCO의 관련 권고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정보요소와 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² 상품을 반출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관세, 조세 및 수수료의 최종 지급액을 충당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18 조 위험 관리

양 당사국은 저위험 상품의 반출 과정 및 절차를 원활히 하고 간소하게 하며, 고위험 상품의 반출에 대한 통제를 개선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모든 수입 요건의 준수를 위해 포괄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모든 반입화물을 검사하기 보다는, 자국의 검사 및 반출 절차 및 사후 검증 절차를 위험 평가 원칙에 근거하도록 한다. 이것은 양 당사국으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검사가 요구될 수 있는 품질 관리 및 법규 준수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4.19 조 특송 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세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 화물을 위한 신속한 세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 가. 특송 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세관절차를 규정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WCO의 「세관에 의한 특송물 즉시반출 지침」을 활용한다.
- 나. 가능한 한도에서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특송 화물을 도착 시 반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특송 화물이 물리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사전 전자정보의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한다.
-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 라. 가능한 한도에서, 자국 국내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특송 화물을 반출하도록 규정한다.
- 마. 중량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그리고,
- 바. 당사국의 법규와 합치하며, 그 당사국이 결정한 저가의 상품 반입을 위하여 간소화된 서류 요건을 규정한다.

제 4.20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일반 기관 요건 및 반입 절차, 운영 시간 및 질의를 위한 연락처를 포함하여,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의 요건에 관련된 자국의 모든 법규, 규정 및 행정적 성격의 고시를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신속히 공표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이 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위험 평가의 수행에 관련된 법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을 공포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8 절 정의

제 4.2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행정기관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 관련 법 및 규정의 운영과 적용을 책임지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이란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및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수출에 관하여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출자를 말한다.

특송 화물이란 WCO 의 「세관에 의한 특송품 즉시반출 지침」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동일한 상품이란 제 3 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는 관련 없는 외형적 사소한 차이와는 관계없이,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을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입자 및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수입에 관해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입자를 말한다.

간접 재료란 제 3.14 조(간접 재료)의 “간접 재료”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재료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

상품의 순위가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상품의 순위가”를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생산자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이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이란 제 3.20 조(정의)에 정의된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말한다.

통일규칙이란 제 4.12 조에 따라 수립된 “통일규칙”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란 관세 계산을 위한 목적상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위한 목적상 상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